

BLACKROCK®

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UH)

투자설명서





블랙록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위험, 환율변동위험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m/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0.08.31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0.10.30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블랙록자산운용(주), ☎ 02-751-0500, www.blackrock.com/kr)

판매회사 본·지점(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목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의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불임] 용어 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원본손실 위험 등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 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 (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개설시 수집된 정보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0.8.31)

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펀드코드 : 87687)

투자 위험 등급						블랙록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을 감안하여 투자 위험등급을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이며,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투자 하여 매우 높은 원본손실위험, 시장위험, 재간접투자위험 및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투자신탁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 광업주 펀드'(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 (최대 100%까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신탁재산의 100% 이하)을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BGF 월드 광업주 펀드)는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철광석 및 석탄과 같은 기초금속 및 산업광물의 생산을 주된 경제활동으로 하는 채광 및 금속회사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총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클래스 종류</th> <th colspan="2">투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th> <th colspan="6">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th> </tr> <tr> <th>판매수수료</th> <th>총보수</th> <th>판매보수</th> <th>동종유형 총보수</th> <th>1년</th> <th>2년</th> <th>3년</th> <th>5년</th> <th>10년</th> </tr> </thead> <tbody> <tr> <td>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td> <td>1.00</td> <td>1.565</td> <td>1.00</td> <td>1.02</td> <td>258</td> <td>425</td> <td>601</td> <td>979</td> <td>2,101</td> </tr> <tr> <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td> <td></td> <td>2.065</td> <td>1.50</td> <td>1.40</td> <td>212</td> <td>435</td> <td>668</td> <td>1,171</td> <td>2,667</td> </tr> <tr> <td>수수료선취-온라인형(A-e)</td> <td>0.50</td> <td>0.815</td> <td>0.25</td> <td>0.65</td> <td>133</td> <td>221</td> <td>313</td> <td>511</td> <td>1,100</td> </tr> <tr> <td>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td> <td></td> <td>1.665</td> <td>1.10</td> <td>0.91</td> <td>171</td> <td>351</td> <td>539</td> <td>945</td> <td>2,151</td> </tr> </tbody> </table>				클래스 종류		투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1.00	1.565	1.00	1.02	258	425	601	979	2,1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2.065	1.50	1.40	212	435	668	1,171	2,667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50	0.815	0.25	0.65	133	221	313	511	1,1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1.665	1.10	0.91	171	351	539	945	2,151						
클래스 종류		투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1.00	1.565	1.00	1.02	258	425	601	979	2,1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2.065	1.50	1.40	212	435	668	1,171	2,667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50	0.815	0.25	0.65	133	221	313	511	1,1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1.665	1.10	0.91	171	351	539	945	2,151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p>주 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 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 2)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들의 최근 총보수 기종평균인 연 [040]%를 예상치로 포함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주 3)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온라인형의 경우 종류 Ae형이 Ce형 보수보다 지속적으로 낮으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주 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주 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종류</th> <th rowspan="2">최초설정일</th> <th>최근1년</th> <th>최근2년</th> <th>최근3년</th> <th>최근5년</th> <th>설정일이후</th> </tr> <tr> <th>2019/09/01 ~ 2020/08/31</th> <th>2018/09/01 ~ 2020/08/31</th> <th>2017/09/01 ~ 2020/08/31</th> <th>2015/09/01 ~ 2020/08/31</th> <th>2010/09/01 ~ 2020/08/31</th> </tr> </thead> <tbody> <tr> <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td> <td>2008-09-24</td> <td>22.49</td> <td></td> <td></td> <td></td> <td>1.25</td> </tr> <tr> <td>비교지수(%)</td> <td>2008-09-24</td> <td>20.18</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수익률 변동성(%)</td> <td>2008-09-09</td> <td>34.57</td> <td>27.98</td> <td>25.47</td> <td>26.43</td> <td>28.76</td> </tr> </tbody> </table>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이후	2019/09/01 ~ 2020/08/31	2018/09/01 ~ 2020/08/31	2017/09/01 ~ 2020/08/31	2015/09/01 ~ 2020/08/31	2010/09/01 ~ 2020/08/3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2008-09-24	22.49				1.25	비교지수(%)	2008-09-24	20.18					수익률 변동성(%)	2008-09-09	34.57	27.98	25.47	26.43	28.76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이후																																																															
		2019/09/01 ~ 2020/08/31	2018/09/01 ~ 2020/08/31	2017/09/01 ~ 2020/08/31	2015/09/01 ~ 2020/08/31	2010/09/01 ~ 2020/08/3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2008-09-24	22.49				1.25																																																															
비교지수(%)	2008-09-24	20.18																																																																			
수익률 변동성(%)	2008-09-09	34.57	27.98	25.47	26.43	28.76																																																															
<p>주 1) 비교지수: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in KRW x 100%</p>																																																																					

	<p>주2)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또한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p> <p>주3)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p> <p>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p> <p>주5) 이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비교지수는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비교를 위해 최초설정일자로 소급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20년 8월 18일자로 (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 x 95%) + (Call x 5%)에서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in KRW x 100%로 변경되었습니다.</p> <p>주6)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p>
--	--

(2020년 8월 31일 현재, 단위:%)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순자산 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재간접형)				운용경력 연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자산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운용전문인력	조동혁	1963년	책임운용 전문인력	28개 (팀공동)	9484억원 (팀공동)	17.67	15.32	17.67	15.32	약 14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 - 한국투자신탁뉴욕사무소장 - (현) 블랙록자산운용 운용팀	
<p>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p> <p>주2)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 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p> <p>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4)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p> <p>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6) "운용경력연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p>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	---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피투자집합투자 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工商주 펀드(광업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주식 등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환율변동위험	<p>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주식 등은 미국달러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실시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p>	

※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17 시 이전 : 3 영업일 기준가 매입 • 17 시 경과 후 : 4 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 17 시 이전 : 4 영업일 기준가로 8 영업일 지급 • 17 시 경과 후 : 5 영업일 기준가로 9 영업일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 쪽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장소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5.4% (법인지방소득세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 과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전환절차 및 방법	<p>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1 수익증권을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을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인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을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집합투자업자	블랙록자산운용(주) (☎ 02-751-0500)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기간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0.10.30																							
효력발생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m/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기구의 사업목적 및 요약 재무정보에 대하여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종류(Class)</th> <th style="text-align: center;">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30%;"> 판매수수료 </td> <td> 수수료 선취 (A) 수수료 미징구 (C) </td> <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td> <td></td> <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D)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판매경로 </td> <td> 온라인(e) </td> <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 </tr> <tr> <td></td> <td> 오프라인 </td> <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 </tr> <tr> <td></td> <td> 온라인 슈퍼(S) </td> <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기타 </td> <td> 기관 (F) </td> <td>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td> <td> 무권유 저비용 (G) </td> <td>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body> </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 (A)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D)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기관 (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 (A)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D)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기관 (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m/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lackrock.com/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lackrock.com/kr)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87687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A)	866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866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2)	984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3)	984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4)	984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866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866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866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86608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BU9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BU9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BU96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BU96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BU9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C-G)	BU96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중도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 조좌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금액이 예정좌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때까지 판매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판매됩니다.
-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m/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1) 그 모집(매입)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87687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A)	866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866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2)	984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3)	984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4)	984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866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866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866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86608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BU9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BU9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BU96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BU96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BU9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C-G)	BU96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2008.09.09.	최초 설정			
2008.11.14.	환매수수료 인하 변경등록			
2009.04.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펀드로 전환 - 펀드명칭 변경 [블랙록 월드광업주 주식투자신탁-자(UH)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UH)]			
2010.03.16.	투자신탁의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변경전		변경후	
	17 시 이전 자금 을 납입한 경우	17 시 이후 자금 을 납입한 경우	17 시 이전 자금 을 납입한 경우	17 시 이후 자금 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제 2 영업 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 격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010.05.03.	종류 C 수익증권 판매보수율 인하 및 종류 A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율 인하 변경			
2011.01.10.	(1) 종류 C 수익증권 CDSC(이연판매보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C 수익증권 명칭변경: 종류 C 수익증권(변경 전) -> 종류 C1 수익증권(변경 후) - 종류 C2, C3 및 C4 수익증권 신설 <p>(2) 종류 C-e 수익증권의 판매보수율 인하 및 정률식 적용</p>
2011.11.1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3.11.22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주식 →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자투자신탁의 펀드명칭 변경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UH)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2015.02.17.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15.12.01	비교지수 변경
2016.02.29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2017.08.10	C-Pe, C-Rpe, CG 클래스 신설
2017.08.28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18.03.29	환매수수료 삭제
2019.09.25	기업공시제도 변경에 따른 한글 클래스명 표기 등
2020.08.18	비교지수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 가 84 번지 서울파이낸스빌딩 23 층 (02-751-055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20년 8월 31일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순자산 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재간접형)				운용경력년 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자산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조동혁	1963년	책임운용 전문인력	28개 (팀공동)	9,484억원 (팀공동)	17.67	15.32	17.67	15.32	약 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 - 한국투자신탁뉴욕사무소장 - (현) 블랙록자산운용 운용팀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 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 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주 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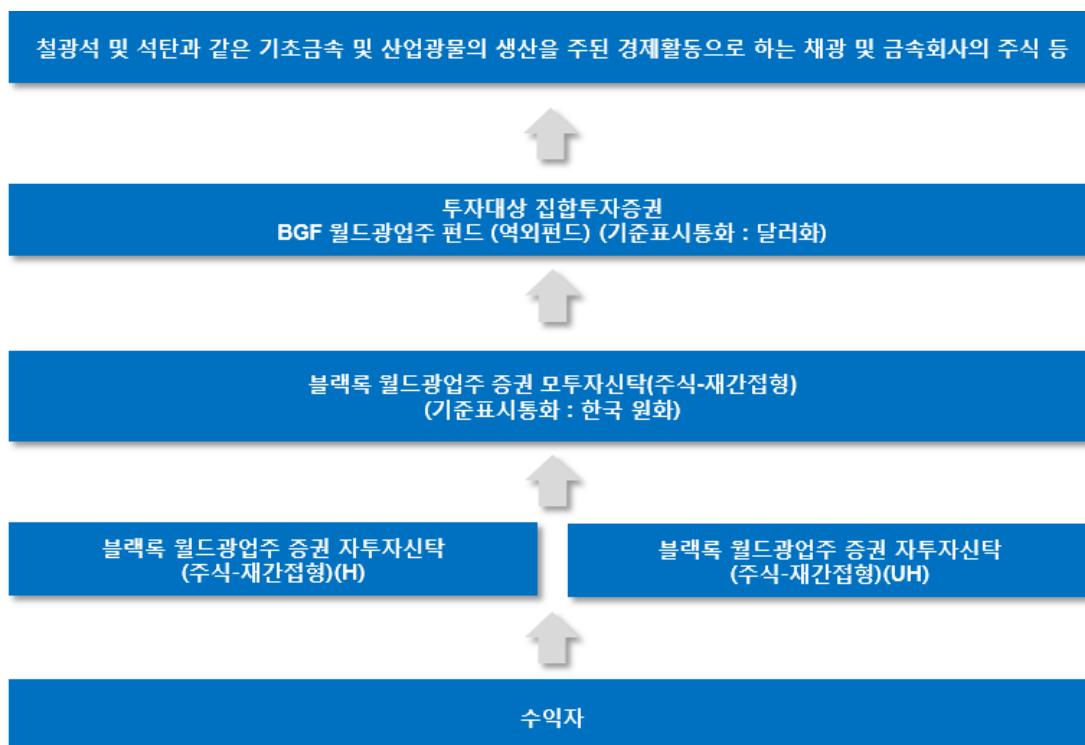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조동혁, 이동찬	최초 설정 이후. ~ 2011.11.10.
조동혁	2011.11.11 ~ 현재

주 1) 2011년 11월 기준 최근 3년 간의 책임운용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재간접형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D)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기관 (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PR)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는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클래스	가입기준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2)	종류 C1 수익증권 보유 1년 이상인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3)	종류 C2 수익증권 보유 1년 이상인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4)	종류 C3 수익증권 보유 1년 이상인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기관투자자 및 기금,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 개인 또는 500억 이상 법인, 판매회사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 및 변액보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자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 (100% 이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p>주요 투자대상</p> <p>집합투자증권 50% 이상</p> <p>투자목적</p> <p>광업 관련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p> <p>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에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이면서 광업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GF 월드 광업주 펀드’(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 ▪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며, 증권의 매매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비용 등의 상승을 유발 할 수 있음 ▪ 비교지수: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x 100%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주요 운용전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투자철학: “적절한 리스크 보유 기업에 장기투자 함으로서 천연자원 업종에 대한 가장 우수한 투자기회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위험 수준에서 최선의 금속 및 광물 가격을 제시하는 관련 기업에 투자 ✓ 운영설비 보유와 미개발지역 사업 관련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 ✓ 모든 투자에 있어서 완벽한 실적 관리에 강한 기업에 투자 ✓ 리서치 위주 투자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내 개별종목의 수익률 가능성 및 리스크 평가. 이는 리서치를 통해서만 평가 가능 ✓ 장기적 가치에 초점: 단기적 변동성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 가치투자 초점 ✓ 투기가 아닌 투자 (Investors not speculators): 실제가치를 보유한 기업에 투자 ② 전 세계 광업 및 금속업 관련주에 분산 포트폴리오 구축 ③ 주로 철, 석탄, 구리, 아연, 니켈 등의 기초금속, 금광회사 및 산업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

	<p>④ 상향식 접근방법(Bottom Up) 종목 선정 – 하향식 접근방법(Top Down) 자산 배분은 리스크 관리 차원</p> <p>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달러 대비 투자대상국 통화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음. 다만, 해당 투자 국가의 통화가치 급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라 환헤지를 검토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p>
--	--

라. 전환형 구조 (엄브렐러형 구조)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재간접형 구조

당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에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인 “BGF World Mining Fund(이하 ‘BGF 월드광업주 펀드’라 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구조의 투자신탁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재간접투자신탁(Fund of Funds)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특히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 광업주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원·달러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투자 대상	투자 한도	주요 내용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규약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유동성자산	1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상기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p>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음</p>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관련 선물 및 통화스왑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결제의 위험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래에 한함 <p>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 모수익증권 및 유동성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모수익증권 및 유동성자산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 대상	투자 한도	주요 내용
집합투자증권	50%이상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주식	40%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채권	40%이하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장내·외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내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장외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투자증권의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20%이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및 금리스왑거래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및 금리스왑거래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6.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투자 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파생상품 투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p>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 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집합투자 증권에의 투자제한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p> <p>가. 집합투자업자(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종목 투자제한

	<p>외화자산으로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마. 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증개업자(외국 투자증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증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 매매 ·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 ·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	--	--------------------------

	<p>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조 제 2항 제 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파생상품 투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p>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 (1) 이 투자신탁은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에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이면서 광업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GF 월드 광업주 펀드’(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신탁재산의 100%이하)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10%범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3)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광업주 관련 국내외 증권에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in KRW x 100%**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주식 등은 미국달러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해지전략을 실시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 **환해지의 개념 및 장·단점**

환해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해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를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해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가. 투자전략

- (1) 이 투자신탁은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에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 투자기구)이면서 광업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GF 월드 광업주 펀드’(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신탁은 글로벌 광업주 관련 증권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 100%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피투자집합투자기구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BGF 월드 광업주 펀드	관리회사	BlackRock (Luxembourg) S.A. (일일운용 업무 및 직접 또는 위임에 의하여 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관리 등 모든 운용상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회사)
	구조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의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 중 하나 ※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개방형 투자회사로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는 복수의 하위펀드로 구성된 “엄브렐러 형(전환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설정일 및 소재지	설정일: 1997년 03월 24일 BGF 설립국가: 룩셈부르크
	투자목적 및 전략	- 철광석 및 석탄과 같은 기초금속 및 산업광물의 생산을 주된 경제활동으로 하는 채광 및 금속회사의 주식에 펀드의 70% 이상을 투자함. 또한 기타 귀금속 또는 광물 채광을 주된 경제활동으로 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 가능
	비교지수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이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해당 피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운용전략 사항]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주요 운용전략 사항

- ① 투자철학: “적절한 리스크 보유 기업에 장기투자 함으로서 천연자원 업종에 대한 가장 우수한 투자기회를 제공”
 - ✓ 적절한 위험 수준에서 최선의 금속 및 광물 가격을 제시하는 관련 기업에 투자
 - ✓ 운영설비 보유와 미개발지역 사업 관련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
 - ✓ 모든 투자에 있어서 완벽한 실적 관리에 강한 기업에 투자
 - ✓ 리서치 위주 투자 전략
 - 포트폴리오내 개별종목의 수익률 가능성 및 리스크 평가. 이는 리서치를 통해서만 평가 가능
 - ✓ 장기적 가치에 초점: 단기적 변동성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 가치투자 초점
 - ✓ 투기가 아닌 투자 (Investors not speculators): 실제가치를 보유한 기업에 투자
- ② 전 세계 광업 및 금속업 관련주에 분산 포트폴리오 구축
- ③ 주로 철, 석탄, 구리, 아연, 니켈 등의 기초금속, 금광회사 및 산업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
- ④ 상향식 접근방법(Bottom Up) 종목 선정 – 하향식 접근방법(Top Down) 자산 배분은 리스크 관리 차원
-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며, 증권의 매매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비용 등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 비교지수: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 100%)
-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며, 증권의 매매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비용 등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당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달러 대비 투자대상국 통화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국가의 통화가치 급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라 환헤지를 검토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피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주식 등은 미국달러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환헤지의 개념 및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당해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전세계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계의 변경 등은 당해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광업주 펀드(광업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주식 등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주식 등은 미국달러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실시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유동성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금리변동에 따라 동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사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계약종료시점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동계약을 차월물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이전비용이 발생하거나 차월물과 당월물 간의 가격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로 인한 레버리지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은 전세계 국가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 할 수 있는 국가 위험에 노출됩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한 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위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되어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자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후강통을 통한 투자 관련 위험	<p>2015년 12월 18일부터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후강통*을 통해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A 주식에 펀드 총 자산의 10%까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 후강통 : 후강통이란 중국과 홍콩간 주식 교차거래를 위해 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HKEX"), 상하이증권거래소 및 중국예탁결제원이 개발한 증권 거래 및 결제 연계 시스템을 말 합니다. 후강통은 후구통과 강구통으로 이루어집니다. 후구통에서 홍콩과 해외 투자자들(후강통 펀드 들 포함)은 각자의 홍콩 증개인들 및 홍콩 증권거래소가 설립한 증권거래 회사를 통하여 상하이증권 거래소에 주문을 함으로써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적격 중국 A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강 구통에서 중국 투자자들은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특정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 10일자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자로 후강통 거래가 개시되었습니다. 후강통을 통한 중국 본토 투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위험이 수반됩니다.</p> <p>쿼터 제한(Quota Limitations) 후강통은 쿼터 제한을 받으며, 특히, 해당 쿼터 잔여분이 소진되거나 일일 쿼터가 초과되는 경우, 매수주문은 거절됩니다(단, 투자자들은 쿼터 잔여분과 관계없이 역외증권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쿼터 제한으로 인하여 관련 후강통 펀드가 후강통을 통하여 적시에 중국 A 주식에 투자할 능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후강통 펀드는 그 투자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p> <p>과세위험 2014년 11월 14일에 중국 조세당국은 해외투자자들(RQFII 투자자들 포함)이 후강통을 통하여 거래되는 중국 A 주식에서 얻은 소득을 2014년 11월 17일부터 중국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면세 조치는 중국 A 주식(중국의 '부동산(land-rich)' 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중국 역내 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시적인 면세조치의 일몰기간이 정하여 지지 않아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국 조세당국이 이를 임의로 종료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소급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조세당국은 해당 펀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조세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면세조치가 폐지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중국 A 주식 관련 소득에 대하여 중국 과세 대상이 되며, 그 결과 펀드가 조세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는 조세협약에 따라 완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에 따른 혜택도 투자자들에게 돌아갑니다.</p>

법적/실질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후강통의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은 홍콩의 중앙예탁기관 자격으로 홍콩중앙예탁기관("HKSCC")이 운영하는 홍콩 중앙거래결제시스템("CCASS") 계좌로 보관회사 및 하위보관회사가 보유하게 됩니다. 홍콩중앙예탁기관은 다시 명의대리인의 자격으로 중국예탁결제원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음니버스 증권계좌를 통하여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을 보유합니다. 홍콩중앙예탁기관을 명의대리인으로 하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후강통 펀드들의 정확한 성격 및 그 권리는 중국 법상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중국 법에서는 "법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거나 이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명의대리인 계좌 구조와 관련된 중국 법원에서의 소송사례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법상 후강통의 권리 및 이익의 정확한 성격 및 그 집행방법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홍콩중앙예탁기관이 홍콩에서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그러할 가능성이 낮지만), 후강통 펀드가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을 지닌 것으로 간주될지 혹은 채권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홍콩중앙예탁기관의 일반자산의 일부로 간주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운영위험

후강통은 관련 시장 참가자들의 운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특정 정보기술 수용력, 위험관리 및 해당 증권거래소 및/또는 청산기관(clearing house)에서 정하는 기타 요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시장 간의 증권 체제 및 법적 시스템이 상당히 달라 시장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홍콩증권거래소와 시장 참가자들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거나 두 시장에서의 변동 및 발전에 지속적으로 순응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그 프로그램을 통한 두 시장에서의 거래가 교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A 주식에 투자(하고 그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해당 후강통 펀드의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제위험

후강통은 신설된 제도입니다. 현행 규정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지 여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후강통이 폐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국과 홍콩의 관할 규제당국 / 증권거래소는 후강통의 운영과 법적 집행 및 후강통을 통한 교차매매와 관련된 신설 규정을 수시로 공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강통 펀드들은 위와 같은 변동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강통을 통한 중국 본토 투자에 대한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2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중 후강통 투자 관련 특정 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TCA 및 여타 국경 간 보고시스템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는 2010년 3월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의 일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보고 제도로서 FATCA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면제되지 않는 비미국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 또는 "FFI")을 포함한 특정 그룹의 자금 수령인에게 미국원천소득으로부터 (혹은 미국원천소득에 기인하여) 혹은 미국 자산에 대하여 지급된 금액에 3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5. 6. 10. 미국-대한민국 정부간 체결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양국은 자국의 특정 금융기관("보고 금융기관")에서 보고받은 상대국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목적상 보고 금융기관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직접적인 또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간접적인 미국 투자자에 대한 특정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청은 동 정보를 다시 미 조세당국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과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미국-대한민국 정부간 협정에서 정하는 보고제도를 준수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FATCA를 준수하는 기관으로 처리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이 FACTA를 준수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30%의 원천징수세가 미국원천소득으로부터 (혹은 미국원천소득에 기인하여) 혹은 미국 자산에 대하여 수령한 지급금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다른 관할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동 조세정보교환 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기초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대한민국 법으로 시행되면,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협약의 당사자인 관할지에 소재하는 직접적인 또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간접적인 투자자에 대한 특정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국세청은 동 정보를 다시 해당 조세당국에 제공하게 됨). 상기한 바에 기초하여 이러한 보고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은 특정 정보를 이 투자신탁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사들은 미국인의 펀드 수익권 소유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운용실적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동성위험	투자대상국가의 유가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 과정 및 현금 운용 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 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지위험	이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추가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에 따른 자금유입은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위험	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에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액산정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 중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운용회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외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운용회사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운용사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운용회사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 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1 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최근 결산일 기준 연환산 표준편차 : **25.47%**]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 및 관련 산업의 경제 등의 여건 변화와 국·내외 주식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주 1)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 실제수익률을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고려하여 투자위험등급을 분류 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3) 수익률의 변동성(표준편차)은 투자기간 동안 펀드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펀드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음을 의미합니다.

주 4) 실제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 n=156)간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사용합니다. (다만,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이 156주 이상인 경우에는 156주간만을 계산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이 155주인 경우 n= 155로 적용)

※ 수익률 변동성 (표준편차) 계산수식 :

$$\sigma = \sqrt{\frac{52}{155-1} \sum_{t=0}^{154} (r_t - \bar{r})^2}, \quad \bar{r} = \frac{1}{155} \sum_{t=0}^{154} r_t$$

* r_t : 측정 기준시점에서 t주전 월요일의 주간 수익률

- 결산일이 속한 날의 t주전 월요일 기준가를 (t+1)주전 월요일 기준가로 나눈 값에 1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결산. 배당 등을 감안하여 조정

주 5)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현저히 달라져 과거 수익률 변동성이 현재 펀드의 위험도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에서 펀드가 신규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위험등급을 다시 산정합니다.

주 6) 모자형 구조의 경우 자펀드는 자펀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 7) 종류형 펀드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 8)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 9) EL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부동산 펀드 등과 같이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경우에는 수익률 변동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주 10)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한 결과, 그 값이 위험등급 경계구간에 있는 경우이거나 위험등급이 매년 계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을 덜 위험한 등급으로 하향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높은 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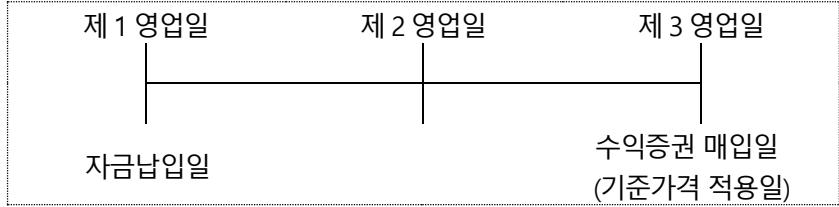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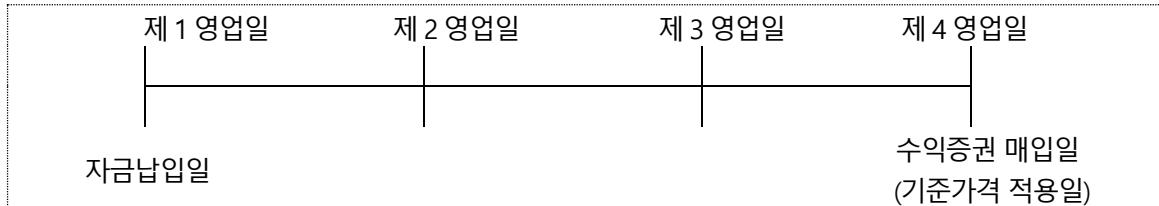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각 종류별 가입가격은 제 2부. 6. 나. 종류형 구조 중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운용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추가청약이 어려워질 경우에 모집(판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신청]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날의 익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판매수수료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각 종류별 판매수수료는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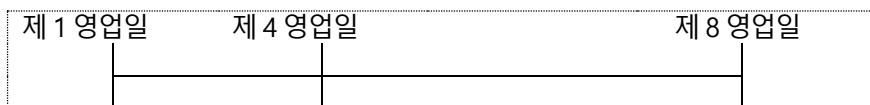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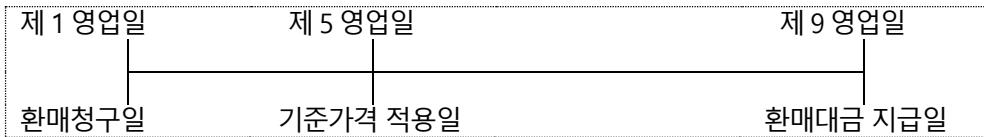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	----------

-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 행사를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 영업일 전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제7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규약과 법령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a.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b.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c.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a.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b.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c.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매연기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제 1 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집합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 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이연판매보수 적용에 따른 수익증권 종류의 전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1)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1 수익증권을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2)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을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3)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인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을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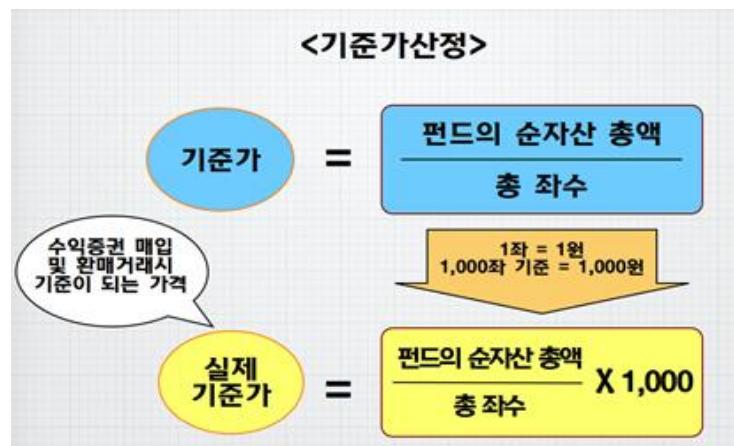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재산을 모두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두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두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기준가격은 미국달러로 표시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당해 투자신탁은 법 제 231 조에 의거하여 판매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 · 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m/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모투자집합투자신탁 및 피투자집합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은 2 개 채권평가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적용하여 평가. 다만, 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평가.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개월간 계속해서 매월 10 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은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한 가격
비상장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상장채권 중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개월간 계속해서 매월 10 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못한 상장채무증권을 포함한다)은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한 가격. 다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외화표시 상장주식 / 외화표시 상장채무증권	당해 투자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다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다만, 위의 기준가격 또는 최종시가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집합투자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비상장 외화표시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부동산	취득가격.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정하는 가액
실물자산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실물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외화로 표시된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증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이 경우 외국환증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제공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제공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

기준가격 계산시 그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정가격이 없거나 공정가격 산정이 곤란한 자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

집합투자재산 평가업무의 종합의사결정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합니다.

구성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회사경영위원회 위원: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운용본부장, 관리담당임원 (2) 위원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 임원(Operations) (3) 위원 :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평가위원회의 주무부서는 Operations Team 으로 합니다.
소관사항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수익증권의 종류에 따른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가입자격	부담비율(연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주1)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납입금액의 0.5%	없음	없음	없음

온라인형(A-e)	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이내(주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자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된 자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기관투자자 및 기금,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 개인 또는 500억 이상 법인, 판매회사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 및 변액보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C-G)	투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내용

분류	자산운용 회사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용 비율	동종유형 총 보수 비율	합성총보수 비율	증권거래 비용
블랙록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UH)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38	0.0038		0.4038	0.0000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0.5000	1.0000	0.0400	0.0250	1.5650	0.0038	1.5688	1.0200	1.9688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0.5000	1.5000	0.0400	0.0250	2.0650	0.0036	2.0686	1.4000	2.4686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0.5000	1.3700	0.0400	0.0250	1.9350	0.0038	1.9388		2.3388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0.5000	1.2300	0.0400	0.0250	1.7950	0.0038	1.7988		2.1988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0.5000	1.1000	0.0400	0.0250	1.6650	0.0038	1.6688		2.0688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0.5000	1.1000	0.0400	0.0250	1.6650	0.0038	1.6688	0.9100	2.0688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5000	0.0500	0.0400	0.0250	0.6150	0.0036	0.6186		1.0186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0.5000	0.0200	0.0400	0.0250	0.5850	0.0036	0.5886		0.9886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0.5000	0.5000	0.0400	0.0250	1.0650	0.0036	1.0686		1.4686	0.0000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5000	0.2500	0.0400	0.0250	0.8150	0.0039	0.8189	0.6500	1.2189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0.5000	0.6000	0.0400	0.0250	1.1650	0.0037	1.1687		1.5687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0.5000	0.3000	0.0400	0.0250	0.8650	0.0037	0.8687		1.2687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토직연금형(C-Rp)	0.5000	0.5000	0.0400	0.0250	1.0650	0.0037	1.0687		1.4687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0.5000	0.2500	0.0400	0.0250	0.8150	0.0037	0.8187		1.2187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C-G)	0.5000	1.1500	0.0400	0.0250	1.7150	0.0036	1.7186		2.1186	0.0000
부담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	사유발생 시	-	-	-	사유발생 시

주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을 의미하며, 기타비용 비율은 해당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접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작전회계년도: 2019.09.09.~2020.08.31]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약 연 0.40%(피투자펀드의 운용보수는 연 0.40%이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비용은 제외)으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4)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접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작전회계년도: 2019.09.09.~2020.08.31]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5)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 6)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 원)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블랙록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UH)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0.39	0.79	1.22	2.13	4.85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0.39	0.79	1.22	2.13	4.85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7.81	424.56	599.64	976.50	2,096.42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58.20	425.34	600.85	978.62	2,101.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1.63	433.85	667.18	1,169.42	2,661.92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12.00	434.60	668.34	1,171.45	2,666.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0.64	349.81	537.94	942.89	2,146.29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1.02	350.60	539.16	945.02	2,151.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8.31	406.54	625.18	1,095.80	2,494.34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8.70	407.34	626.41	1,097.96	2,499.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3.96	377.12	579.94	1,016.51	2,313.87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84.35	377.93	581.18	1,018.67	2,318.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0.64	349.81	537.94	942.89	2,146.29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1.02	350.60	539.15	945.02	2,151.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9.15	223.75	344.09	603.11	1,372.85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9.53	224.54	345.30	605.24	1,377.6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8.65	181.73	279.47	489.85	1,115.04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9.03	182.52	280.68	491.97	1,119.8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3.53	171.23	263.32	461.54	1,050.59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3.91	172.01	264.51	463.64	1,055.36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2.86	220.13	311.76	508.99	1,095.11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3.26	220.94	313.01	511.19	1,100.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9.40	244.76	376.40	659.74	1,501.76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9.78	245.55	377.61	661.86	1,506.57

주 1) 투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단 3년 미만 환매시 발생하는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류 C1, C2, C3, C4 수익증권 관련 총보수·비용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9월 6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있는 이자·배당 소득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 다음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세율 및 과세대상 금액 포함)은 일반적으로 모든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내용을 참고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향후 관련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매사와도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①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②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이 >1 이면 1, 환급비율이 <0 이면 0 으로 함

- ③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7 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해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을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해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환해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해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해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 · 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 · 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5.4% (법인지방소득세 포함)

- ①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②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세율 및 과세대상 금액 포함)은 관련세법의 변경, 과세 당국의 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 C-p, C-Pe, S-p)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됨.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단위 : 쪽, 원)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의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0기(2017.09.09. ~ 2018.09.08.)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1기(2018.09.09. ~ 2019.09.08.)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2기(2019.09.09. ~ 2020.08.3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제표

(단위 : 원)

요약재무정보	제 12 기 20200831	제 11 기 20190908	제 10 기 20180908
I. 운용자산	8,118,722,084	5,006,805,231	6,959,870,287
증권	7,910,305,403	4,897,836,265	6,843,842,673
현금 및 예치금	208,416,681	108,968,966	116,027,614
II. 기타자산	118,778,880	35,996,680	28,475
자산총계	8,237,500,964	5,042,801,911	6,959,898,762
II. 기타부채	234,084,179	59,093,478	28,680,561
부채총계	234,084,179	59,093,478	28,680,561
I. 원본	9,787,945,423	7,535,823,912	11,150,987,813
II. 수익조정금	-926,855,535	624,028,744	2,887,215,343
III. 이익잉여금	-857,673,103	-3,176,144,223	-7,106,984,955
자본총계	8,003,416,785	4,983,708,433	6,931,218,201
I. 운용수익	1,792,128,317	1,135,330,359	-836,132,183
이자수익	1,081,529	1,835,926	1,453,591
매매/평가차익(손)	1,791,046,788	1,133,494,433	-838,133,706
기타이익			547,932
II. 운용비용	97,685,941	91,704,970	99,318,352
관련회사보수	97,422,852	91,447,254	99,057,462
기타비용	263,089	257,716	260,890
III. 당기 순이익	1,694,442,376	1,043,625,389	-935,450,535

주 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순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순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단위: 백만좌, 백만원)

◇ 블랙록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UH)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20170909 ~ 20180908	14,596	14,596	12,850	7,660	14,535	8,633	12,912	13,623
20180909 ~ 20190908	12,912	12,912	5,332	3,177	10,182	6,267	8,062	9,822
20190909 ~ 20200831	8,062	8,062	10,686	6,721	8,177	5,489	10,571	9,295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20170909 ~ 20180908	11,794	11,794	4,800	2,589	10,369	5,494	6,226	8,890
20180909 ~ 20190908	6,226	6,226	671	342	2,125	1,147	4,772	5,421
20190909 ~ 20200831	4,772	4,772	5,641	3,058	4,295	2,603	6,117	5,22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20170909 ~ 20180908	677	677	324	455	837	1,164	164	-32
20180909 ~ 20190908	164	164	7	8	169	205	2	-33
20190909 ~ 20200831	2	2	37	38	11	12	29	28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20170909 ~ 20180908	2,183	2,183	1,370	728	1,983	1,043	1,569	1,867
20180909 ~ 20190908	1,569	1,569	381	197	1,080	566	871	1,201
20190909 ~ 20200831	871	871	436	244	513	291	794	824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20170909 ~ 20180908	56	56	452	567	375	471	133	151
20180909 ~ 20190908	133	133	180	196	263	309	50	20
20190909 ~ 20200831	50	50	5	5	50	64	5	-9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3)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20170909 ~ 20180908	0	0	42	43	0	0	42	43
20180909 ~ 20190908	42	42	133	126	56	56	120	112
20190909 ~ 20200831	120	120	32	34	131	136	20	18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설정(발행)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환매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0909 - 20180908	91	91	1	1	0	0	92	92
20180909 - 20190908	92	92	40	29	15	10	117	112
20190909 - 20200831	117	117	162	115	15	11	263	22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설정(발행)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환매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0909 - 20180908	0	0	323	336	0	0	323	336
20180909 - 20190908	323	323	288	288	26	26	586	585
20190909 - 20200831	586	586	452	474	452	526	585	534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설정(발행)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환매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0909 - 20180908	11	11	157	159	56	56	112	114
20180909 - 20190908	112	112	260	269	195	205	177	176
20190909 - 20200831	177	177	489	526	384	408	283	29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설정(발행)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환매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0909 - 20180908	81	81	255	259	256	254	80	86
20180909 - 20190908	80	80	183	185	122	124	141	141
20190909 - 20200831	141	141	779	823	505	538	415	426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설정(발행)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환매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1122 - 20180908	0	0	2,077	2,171	69	74	2,008	2,097
20180909 - 20190908	2,008	2,008	1,175	1,273	3,081	3,461	102	-180
20190909 - 20200831	102	102	738	821	670	736	170	18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설정(발행)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환매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0914 - 20180908	0	0	408	402	6	6	402	397
20180909 - 20190908	402	402	289	287	92	83	599	605
20190909 - 20200831	599	599	619	628	113	117	1,106	1,111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2020년 8월 31일 현재, 단위:%)

연도	최근1년 2019.09.01 ~ 2020.08.31	최근2년 2018.09.01 ~ 2020.08.31	최근3년 2017.09.01 ~ 2020.08.31	최근5년 2015.09.01 ~ 2020.08.31	설정일 이후 2008.09.09 ~ 2020.08.31
◇ 블랙록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UH)	23.28	15.80	7.67	12.46	-2.20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23.08	15.56	7.49	12.36	-3.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22.49				1.2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22.96	15.44	7.40	12.31	-0.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0.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22.81	15.30			2.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22.96	15.45	7.38	12.24	-2.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토직연금형(C-Rp)	23.67	16.14			8.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23.91	16.36			8.3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토직연금형(C-Rpe)	23.97	16.42			7.66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23.98	16.43			11.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23.56	16.02			7.24
참조지수	20.18	13.67	6.47	17.93	

주 1) 비교지수: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in KRW x 100%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또한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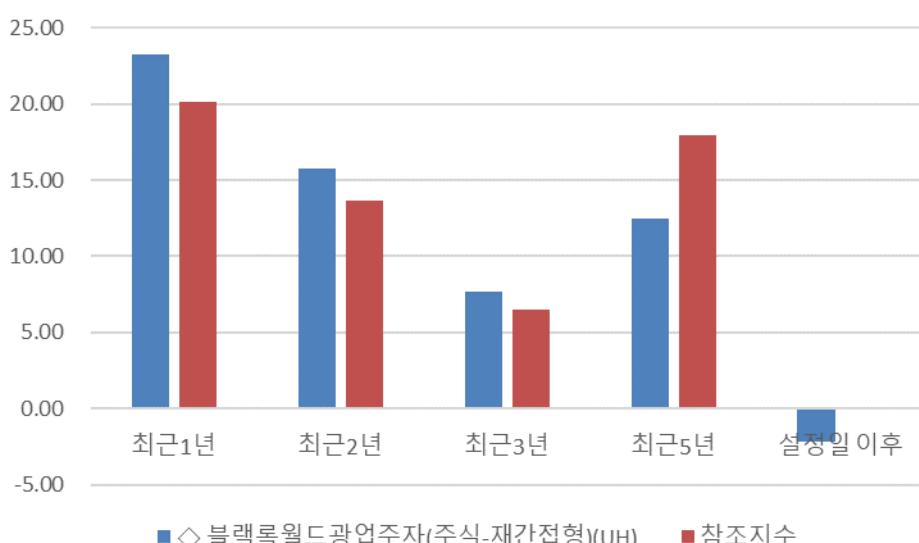
주 3)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5)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비교지수는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비교를 위해 최초설정일자로 소급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20년 8월 18일자로 [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 (KRW) x 95%] + (Call x 5%)에서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in KRW x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주 6)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세전 기준)



(주 1)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은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세전)

(2020년 8월 31일 현재, 단위:%)

연도	최근1년차 2019.09.01 ~ 2020.08.31	최근2년차 2018.09.01 ~ 2019.08.31	최근3년차 2017.09.01 ~ 2018.08.31	최근4년차 2016.09.01 ~ 2017.08.31	최근5년차 2015.09.01 ~ 2016.08.31
◇ 블랙록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UH)	23.28	8.77	-6.93	27.23	13.27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23.08	8.50	-7.00	27.31	13.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22.49		-7.46	26.64	12.9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22.96	8.39	-7.04	27.23	13.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8.09	-7.35	26.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22.81	8.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22.96	8.39	-7.09	27.11	13.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23.67	9.06	-6.2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23.91	9.28	-6.0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23.97	9.34	-7.98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23.98	9.33	-0.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23.56	8.94	-8.58		
참조지수	20.18	7.51	-6.60	38.45	15.77

주 1) 비교지수: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in KRW x 100%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또한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5) 이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비교지수는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비교를 위해 최초설정일자로 소급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20년 8월 18일자로 [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 (KRW) x 95%] + (Call x 5%)에서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in KRW x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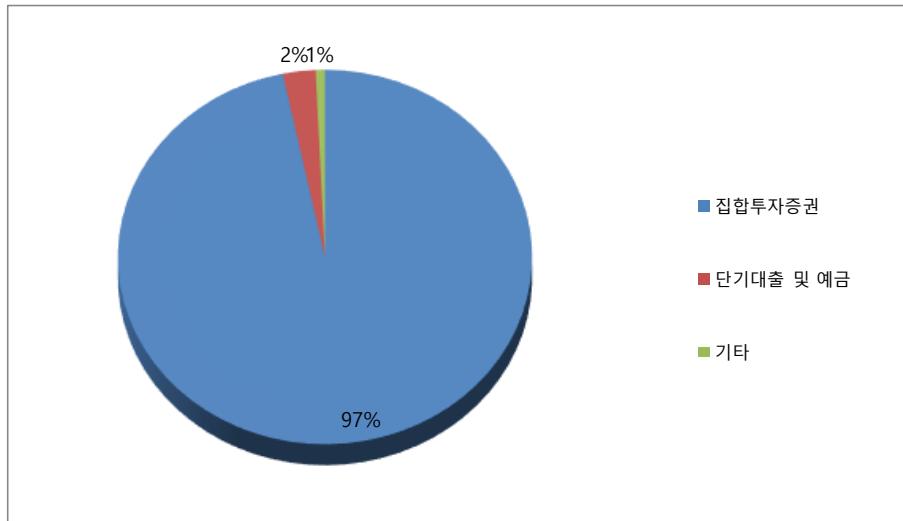
※ 연도별 수익률 그래프(세전 기준)



(주 1)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0년 8월 31일 현재, 단위: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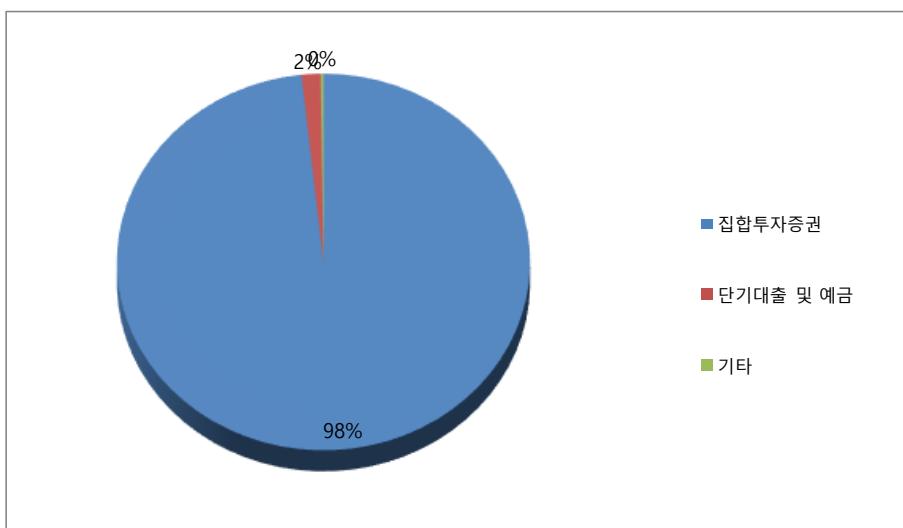
◇ 블랙록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형)(UH)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미국달러	0 (0.00)	0 (0.00)	0 (0.00)	7,910 (96.73)	0 (0.00)	0 (0.00)	7,910 (96.73)					
한국 원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08 (2.55)	59 (0.73)	268 (3.27)
합계	0 (0.00)	0 (0.00)	0 (0.00)	7,910 (96.73)	0 (0.00)	208 (2.55)	59 (0.73)	8,178 (100.00)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0년 8월 31일 현재, 단위: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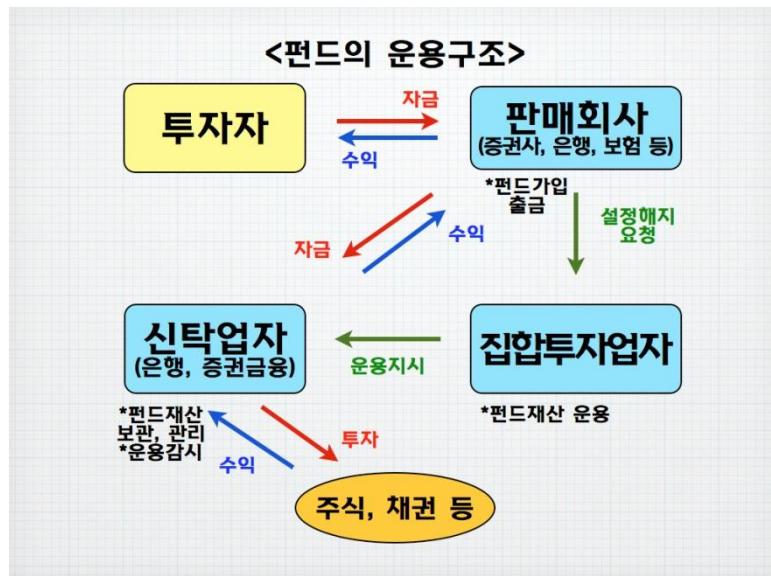


◇ 블랙록월드광업주모(주식-재간접형)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미국달러	0 (0.00)	0 (0.00)	0 (0.00)	94,177 (98.30)	0 (0.00)	1,418 (1.48)	0 (0.00)	95,595 (99.78)				
한국 원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14 (0.22)	214 (0.22)
합계	0 (0.00)	0 (0.00)	0 (0.00)	94,177 (98.30)	0 (0.00)	1,418 (1.48)	214 (0.22)	95,809 (100.00)				

주 1)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빌딩 23 층 (☎ 02-751-0500, www.blackrock.com/kr)
회사 연혁	2008.05.14. 블랙록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주) 설립 2008.07.11. 블랙록자산운용(주) 자산운용업 허가
자본금	145 억원
주요주주현황	BlackRock (Singapore) Holdco Pte. Ltd (100%)

※ 집합투자업자가 속한 기업집단의 개요

블랙록(BlackRock)은 미화 6.84 조 달러에 상당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블랙록은 전 세계의 기관 및 개인을 대신하여 주식, 채권, 단기 금융, 대체 투자 상품 및, iShares®(ETF-상장지수펀드) 전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리스크 관리 및 전략 자문 서비스인 BlackRock Solutions®(블랙록 솔루션)의 사용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미국, 유럽, 아시아, 호주, 중동, 아프리카 지역 세계 30 개국에 13,000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 www.blackrock.com 또는 국문페이지 www.blackrock.com/kr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블랙록, 2019년 6월 30일 기준)

[연혁]

연혁	내용
1988	Blackstone Financial Management 설립
1992	BlackRock 으로 사명 변경
1995	PNC 사의 채권 운용 담당
1996	PNC 의 개방형 무채권 펀드 담당
1998	주식, 채권, 유동성, 무채권 펀드 부문 통합

1999	기업공개 실행 (NYSE: BLK)
2000	BlackRock Solutions®을 통한 리스크 관리 서비스 개시
2005	State Street Research 부문 인수
2006	Merrill Lynch Investment Managers 와 합병
2007	Quellos 인수
2009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Barclays Global Investors)와 통합
2012	클레이모어 자산운용 인수
2013	크레딧 스위스의 ETF 사업 부문 인수 및 부동산 투자 자문사 MGPA 인수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재무상태표

제12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11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블랙록자산운용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12(당)기말	제11(전)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34,641,640,053	32,631,901,122
현금및현금성자산	4,17,18	24,605,815,066	26,103,081,689
미수금	17,18,24	1,548,807,535	346,357,242
미수위탁자보수	16,17	244,714,915	298,240,640
미수수익	16,17,18,24	8,203,445,017	5,830,884,485
선급비용		38,857,520	53,337,066
II. 비유동자산		1,602,262,625	1,114,315,31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17	498,300,000	498,300,000
유형자산	6,7	609,165,022	77,965,525
보증금	17	186,412,500	186,412,500
이연법인세자산	20	308,385,103	351,637,293
자 산 총 계		36,243,902,678	33,746,216,440
부 채			
I. 유동부채		8,596,280,785	5,924,528,585
미지급금	16,17,18,24	4,845,320,828	1,838,082,354
미지급비용	16,17,18,24	2,663,637,935	2,865,527,879
선수수익		-	12,499,997
예수금		88,244,381	70,699,477
당기법인세부채		795,665,141	1,147,718,878
유동성리스부채	9,17,18	203,412,500	-
II. 비유동부채		379,589,567	78,000,000
복구충당부채	10	94,937,675	78,000,000
장기리스부채	9,17,18	284,651,892	-
부 채 총 계		8,975,870,352	6,002,528,585
자 본			
자본금	11	14,500,000,000	14,500,000,000
기타불인자본	22	1,273,026,184	1,163,154,682
이익잉여금	21,25	11,495,006,142	12,080,533,193
자 본 총 계		27,268,032,326	27,743,687,85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6,243,902,678	33,746,216,440

포괄손익계산서

제12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1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블랙록자산운용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12(당)기	제11(전)기
I. 영업수익	12,16,17,24	21,803,614,586	23,831,412,655
II. 영업비용		13,567,982,656	14,179,566,352
일반관리비	13,22,23,24	10,265,881,113	9,619,092,666
수수료비용	16,24	2,835,555,475	4,273,634,949
외환거래손실		466,546,068	286,838,737
III. 영업이익		8,235,631,930	9,651,846,303
IV. 영업외수익		-	-
V. 영업외비용		-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235,631,930	9,651,846,303
VII. 법인세비용	20	1,821,158,981	2,133,130,250
VIII. 당기순이익		6,414,472,949	7,518,716,053
IX. 기타포괄손익		-	-
X. 총포괄이익		6,414,472,949	7,518,716,053
XI. 주당이익	14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2,212	2,583

라. 운용자산 규모 (2020년 8월 31일 현재 순자산 기준/억원)

구분	증권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형						
수탁고	0	0	0	9,484	0	0	0	0	0	9,48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모투자신탁)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래동 1 가 25 번지 (☎ 1588-1770)
홈페이지	www.hsbc.co.kr

나. 주요업무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다. 의무

- (1)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2)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3)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및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 요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라. 책임

- (1)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2)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HSBC 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봉래동 1 가 25 번지(☎ 02-3771-9800)
홈페이지	www.hsbc.co.kr

나. 주요업무

-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다. 의무와 책임

-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의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KIS 채권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3215-1400)
홈페이지	www.keoreap.com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 (1) 채권평가회사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 제공합니다. 채권평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2) 채권평가는 증권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이 공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총회 등

(1) 집합투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집합투자자총회(또는 "수익자총회"라 함)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간주의결권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위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함)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

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함)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법시행령 제217조 제3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 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 188 조제 2 항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 193 조 제 2 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증개업자를 포함함)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 집합투자규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같다)을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④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상기 3 항 내지 4 항에 의거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 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대차대조표
 - ② 순익계산서
 - ③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순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⑥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⑦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 · 국가별 투자내역
 - ⑧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⑩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⑪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⑫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 ① 투자가자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투자가자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③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④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 ⑥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⑦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투자가자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가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②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ㄴ.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 230 조제 3 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 ㄷ.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③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 ⑦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⑧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⑨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blackrock.co.kr)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이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③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증개업자의 선정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은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 (1) 업무 역량(나이트데스크 유무, 브로커 영어 숙련도, 외국사 거래 여부 등)

- (2) 블랙록자산운용(주)를 위한 차별화된 매매서비스(거래 환경 편의성, 가격(best price) 조달 역량 등)
- (3) 거래 중 에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안정성, 내부통제 구조 및 인력 등)
- (4)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지원가능 서비스(리서치 지원, 처리시간(turnaround time), 백오피스 역량 등)
- (5) 회사 기본 정보 (조직, 인력 등)
- (6) 회사의 재무 건전성 (자본/부채비율, 당기순이익의 안정성 등)

자산운용회사는 자체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중개회사별 매매주문을 배분하고 준법감시인이 그 내용을 점검합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 가. 신탁업자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간이투자설명서
4. 투자설명서
5. 기타첨부서류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은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환해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전략을 말합니다.